

#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

우성천

체포제도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에 선행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단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제도는 구속영장 이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법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통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방사범의 체포영장은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건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전문수사인력과 체포장구를 확보하고 광역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소방사범처리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체포제도, 체포영장, 소방사범, 사례분석

## 1. 서론

체포제도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에 선행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단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이재상, 2008: 216).

체포영장제도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 형사소송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구속영장 이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도 법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통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범죄예방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피의자의 인신에 대하여 체포하는 것은 구속영장에서 요구하는 구속의 요건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의미를 가진다(이효원, 2007: 9).

체포영장의 발부를 위한 요건으로는 범죄혐의,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체포의 필요성 등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정당한 이유 없

\* 본 논문은 2011학년도 강원대학교 교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비 지원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논문이며 관계 제위께 감사드립니다.

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을 것,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닐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본 연구의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이다. 소방사범의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심문 조사과정의 경우 조사실 없이 사무실에서 많은 직원과 대면해야하고 문답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침해소지가 있고,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에 체포장구가 없어 관할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야하는 불합리한 점, 별도의 수사부서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 소방사범수사에 있어 역량이 부족한 점 등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소방사범의 체포영장 집행사례는 그 사례가 매우 드물어 무허가 위험물 취급 사례와 방화관리자 미선임 사례 두 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시사점은 소방사범 수사실무와 학술적 가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사건과 방화관리자 미선임 사건에 대한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체포제도의 의의

#### 1) 체포제도의 개념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이재상, 2008: 179). 체포제도는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임의동행과 보호실 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제도를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와 구속(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으로 이원화 하였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가 가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경기도소방학교, 2008: 97).

첫째, 수사 초기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서 간편하게 인치하는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종래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는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과 강제처분인 구속(제201조), 긴급구속(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현행범 체포(제212조)가 있었다. 형사소송법 제 201조 구속의 사유는 엄격히 규정되어 수사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전제로 수사종료 후에 강제 처분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이는 구속영장을 발부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한편 긴급구속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인정되

는 등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임의동행 및 보호실 유치 등 탈법적인 수사관행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도 어렵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 조사를 위한 신병확보 제도가 요구되었다.

둘째, 신체구속의 이유를 중복 심사하여 필요하지 않은 구속을 미리 예방한다는 것이다. 피의자 조사에 있어서 첫 단계로서 체포에 의한 단기구속을 선행시키고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 혐의나 신체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한 정도 인정될 때 다시 법관의 판단을 거쳐 구금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보장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비교적 간이 절차에 의하여 단기간 동안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구속의 경우와 달리 피의자에게 주는 낙인 효과 등 타격은 약화되는 한편 단기간 신병 확보하였다가 다시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경직된 구속수사의 관행을 탈피하여 탄력성 있는 강제수사의 관행을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 2) 체포제도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9월 23일 법률 제341호로 공포되어 동년 10월 14일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일본의 구 형사소송법을 기본 모델로 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백형구, 1990: 142). 그 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하였지만 대인적인 강제수사의 틀은 변화하지 않고 계속 시행해오다가 1995년에 와서 대인적인 강제수사에서 구속제도만을 인정하여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 잡고자 체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체포제도의 도입 배경(이재상, 1991: 60)은 첫째, 구속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피의자를 구인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초기에 피의자를 쉽게 인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체포와 구속의 각 단계에서 신체구속의 이유를 다시 심사하여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구속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적합하다는 점이다.

## 3) 체포제도의 기능

체포제도는 네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손동권, 2008: 231). 첫째, 형사소송법에 체포제도의 도입은 헌법상 규정된 제도를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이다. 헌법 제 12조 제3항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효율적인 국가형벌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절차는 범죄사실과 범인을 밝혀내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체포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형벌법령의 적정하고 신속한 적용을 기함으로써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할 수 있다.

셋째, 적법절차를 통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관행적, 편법으로 운영해 온 수사관행상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피의자를 데려가서 조사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임의동행 등의 편법적으로 피의자를 조사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논란이 되었다.

넷째, 체포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 운영의 전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체포제도의 도입으로 간이절차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꾀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2. 수사의 의의

### 1) 수사의 개념

수사(Investigation)는 형사소송법상으로는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고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이며,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고 정의되고 있다(장규원, 1998: 113-115). 이러한 활동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기도 한다.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활동 목적인 기소여부의 결정과 공소의 수행을 강조하는 개념 정의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수사기능을 모두 검찰이 담당하고 있다.

수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인(私人)에 의한 범인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하는 활동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조사활동과 구별된다. 예를 들어 사인에 의한 현행범의 체포나 피의자나 변호인이 행하는 각종 증거수집활동이나 행정관청이 특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 각종 법령위반 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다.

수사의 개념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범죄사실의 진상 혹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이며, 둘째, 공소수행을 위한 준비단계이고, 셋째, 범죄사실에 형벌법령을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이중 경찰에서의 수사는 범죄의 혐의유무를 밝히기 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라고 하겠다.

### 2) 수사의 지도원리

수사의 기본원리는 수사관에 따라 차이가 생긴다. 범인의 처벌적 측면에 중점을 두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강조됨에 반하여,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중점을 두는 수사관에 의하면 적정절차의 법리가 강조된다. 수사의 목적달성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어느 하나의 원리에만 치중할 수 없고 양대 원리의 합리적인 조화가 요청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상 수사의 지도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 적법절차의 법리이다(이재상, 2008: 298).

### (1) 실체적 진실주의

수사절차는 공소제기 내지 공판절차에 대한 준비절차로서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 예컨대 피의자 자백, 참고인 진술, 압수물·증거조서 등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자료가 될 뿐 아니라, 공판절차에는 유죄·무죄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되므로 공소권 행사의 적정과 형사재판의 공정을 위해서 피의사건의 진상파악이 요청된다.

### (2) 무죄추정의 법리

무죄의 추정이라 함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무죄의 추정은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를 지배하는 지도원리로써 이 법리는 수사의 경우 특히 인신구속에 대한 제한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 (3)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

수사처분은 강제수사의 경우는 물론 임의수사의 경우도 인권 제도적 처분이므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이를 필요최소한도의 법리라고 한다. 필요최소한도의 법리를 강제처분의 제한에 한 지도원리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으나, 임의수사도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수사의 일반적 지도원리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 (4) 적법절차의 원리

적법절차의 원리는 형사절차 전체의 지도원리이므로 수사절차에서도 지도원리로 작용하고 있다. 수사의 상대성은 적정절차의 법리를 그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으며, 수사의 민주화 경향에 따라 인권보장의 기초원리로서 적정절차의 법리가 더욱 강조되어 있다. 적정절차의 법리에서 요구하는 공정한 절차는 형식적인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정한 절차인 것이다.

## 3) 수사기관

수사기관이란 법률상 수사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기관을 말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형사소송법 제195조~제197조 참조).

### (1) 검사

검사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라고 형사소송법에 규정(제195조)되어 있어 수사의 주재자이며 주도적인 수사기관이다. 따라서 검사에게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인정되어 있다.

(2) 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라 함은 수사의 주체인 검사를 보조하여 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사항적 또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지 않고 수사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후술(後述)에서 자세히 논의 하겠다.

3. 소방사범의 의의

1) 소방사범의 수사

소방사범의 수사라 함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소방기본법(제50조 내지 54조),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8조내지 51조), 소방시설공사업법(제35조내지 38조), 위험물안전관리법(제33조 내지 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소방공무원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수사를 행하고 수사의 주재자이며 종결권자인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소방관련법은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효과로 신체형 및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넓은 의미로는 형법의 개념에 포함되며 형법 총칙의 적용을 받는다(신동운, 2004: 162).

2) 소방사범의 특성

소방관련법 위반 범죄는 형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의 범죄행위에 비하여 범죄의 양태 및 수법이 비교적 단조(單調)하나 반면에 고질적이고 위반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소방관련법이 다른 법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기술적인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를 비용의 측면으로 고려하여 직접적인 생산성과 연관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관련법은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법제사법위원회, 1995: 2-9).

3) 소방사범 수사의 기능

소방관련법령은 소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일정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방관련법 위반행위에 관한 소방관련법령도 일반 형법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경기소방학교, 2008; 98).

(1) 규제적 기능

소방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관련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범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적 기능을 한다.

## (2) 보호적 기능

소방관련법령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안녕질서 및 사회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3) 보장적 기능

소방관련법령상의 벌칙규정은 규제적 기능 및 보호적 기능에 의하여 소방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소방관련법령을 준수할 것을 확보하고 사회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부차적으로는 소방관련법령 위반행위에 있어 벌칙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방관련법 위반자에 대하여 보장적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4) 소방사범 수사의 절차

소방관련법 위반 행위자 또는 기업에 대해 수사과정은 ① 내사 → ② 입건 → ③ 관련자 조사 및 증거수집 → ④ 수사 종결 → ⑤ 사건의 송치 순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어떤 기업이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할 경우의 수사 진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첩보를 입수하게 되면 상급자에게 범죄 첩보 입수 보고를 하고,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첩보사실의 신빙성을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전담 검사에게 보고하여 지휘 및 자문을 받는다.

둘째, 행위자 또는 회사대표 등을 출석시켜 조사를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를 확정하여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사건부에 등재한다.

셋째, 현장 촬영, 시료채취 등 증거보강에 필요하거나 양형(量刑)에 참작되어야 할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넷째, 피의자의 신병을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구속영장을 신청·발부받아 피의자의 신병을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인치(引致)한다.

다섯째, 구속사건의 경우에는 법정구속기간 내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수집 등 조사 완료 후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한다.

5) 소방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 현황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는 형사소송법 제 197조<sup>1)</sup>에 근거하여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이는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지 어려운 소방, 철도, 환경, 위생,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교도소 등 특정지역과 시설에 대한 수사나 조세, 마약, 관세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할 때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위 이상 소방준감까지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소방장이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 5조). 전국 소방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834명, 2008년 836명, 2009년 838명, 2010년 904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전국 189개 소방서에 약 4명(특별사법경찰관 1명, 특별사법경찰관리 3명) 정도가 교대근무하고 있는 것이다(<표 1> 참조).

<표 1> 최근 5년간 소방분야 특별사법경찰관 현황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방방재청 (소방서)	1,543	834	836	838	904

※ 자료: 소방방재청(2011).

III. 소방사범 현황과 체포영장 집행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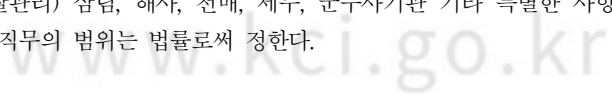
1. 소방사범의 현황 분석

1) 소방사범의 일반적인 특성 분석

소방관계법령 위반자는 일반 형법범과 달리 재산관계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 소방사범은 일반형정범과 달리 독특한 특성이 있다. 다음은 소방사범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첫째, 다른 사범과 달리 일회성 범행이 아닌 계속적인 범행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사건은 일회성 범죄가 대부분이나 소방사범은 계속범인 경우가 많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건축법 위반인 경

1)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우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고 나면 범죄행위의 종료가 아니라 위반상태의 계속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방사범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미선임의 경우 또는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위반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수 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계속범인지 일시범인지의 문제는 공소시효<sup>2)</sup>와 연관되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공소시효의 개시는 범죄발생 순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수사의 지휘권을 가진 검찰과 소방공무원 간의 발생하는 범인식의 차이점이 문제가 되는데, 검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계속범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일시범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일치된 견해 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 위반의 책임소재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소방기본법 이행 책임은 제2조제3호에 따라 관계인<sup>3)</sup>에게 있는데 이는 수사과정에서도 위반자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소방공무원이 특별사범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로 보인다.

셋째, 소방관련법령 위반책임자가 다수인 경우가 있다. 아파트, 상가 등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가 있어 집단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공무원이 특별사범경찰 업무의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소방관련법령 위반자의 인지능력 부족으로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범죄 인지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하여 법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연소자가 관계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에 의한 건축주가 되는 경우 이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문제가 따른다.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대부분은 형사범과 달리 사회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면서 신분확인이 확실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건물주이거나 건물의 관리인, 세입자가 주로 소방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간혹 채무관계로 도피중이거나 법원의 경매 등으로 확실한 소유관계가 불투명한 경우, 불특정 장소에서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그러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소방관서에서 다루는 소방관련법 위반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반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처분을 감수하는 유형이다. 이런 경우는 관할 지역에서 되도록 공무원과의 마찰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법령위반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행정범이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환경사범이나 식품위생사범 등의 위반자는 전적으로 범행사실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둘째, 소방관련 법에 대한 위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업체의 위반행위를 거론하는 유형이다. 사실상 이런 경우는 법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법령의 위반이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상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로 소방관련법에서는 이런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령 등의 모순을 질타하는 유형이다. 소방관련법은 기술적으로 전

2) 형사소송법 제 249조 참조.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문적이면서 일반법과 달리 매우 특수한 사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넷째, 소방관련법령 위반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관계기관의 계도활동 부족을 탓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일체를 부정하며 강력하게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유형이다.

## 2) 최근 5년간 소방사범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소방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281건, 2007년 1,012건, 2008년 806건, 2009년 635건, 2010년 701건으로 나타나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소방관련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준법의식의 향상과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고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2> 참조).

<표 2> 최근 5년간 소방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방사범	1,281	1012	806	635	701

※ 자료: 소방방재청(2011).

## 3) 최근 5년간 소방사범 분야별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소방사범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관계자가 3,034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위험물설치자 690건, 방화관리자 176건, 기타 137건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관계자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관계자란 소방기본법 제2조 3호에서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소방정책 수립에 있어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소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위험물 설치자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산업화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표 3> 참조).

&lt;표 3&gt; 최근 5년간 소방사범 분야별 현황

구분 연도	계	관계자	방화 관리자	위험물 설치자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관리업	방염업	탱크 시험자	안전 관리 대행	기타
계	4,435	3,034	176	690	106	12	109	102	16	25	25	3	137
2010	701	468	13	132	16	3	15	15	0	12	2	1	24
2009	635	372	39	103	19	2	24	13	11	3	1	1	47
2008	806	574	34	124	23	0	22	8	1	0	0	0	20
2007	1,012	684	45	148	18	6	29	41	4	9	0	0	28
2006	1,281	936	45	183	30	1	19	25	0	1	22	1	18

※ 자료 : 소방방재청(2011).

#### 4)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방사범 현황 분석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방사범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142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구 514건, 서울 407건, 인천 393건, 경남 367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소방사범의 분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도권에 공단이 밀집하고 있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소방사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표 4> 참조).

&lt;표 4&gt; 최근 5년간 시도별 소방사범 현황

(단위: 건)

구분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435	407	278	514	393	54	102	134	1,142	186	142	160	204	65	239	367	10
2010	701	36	78	65	59	10	17	26	164	30	41	31	15	14	40	70	5
2009	635	51	37	73	63	9	29	10	138	23	25	33	9	8	49	78	0
2008	806	79	19	91	82	17	14	21	231	43	34	26	49	10	40	50	0
2007	1,012	118	94	98	71	5	19	19	294	29	23	36	82	15	40	68	1
2006	1,281	123	50	189	125	13	24	67	320	62	21	37	49	22	71	104	4

※ 자료: 소방방재청(2011).

## 2.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

### 1)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 (1) 사례분석 배경

위험물이란 인화성,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이다<sup>4)</sup>. 위험물은 그 성질상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높아 허가 없이 함부로 저장 또는 취급하게 되면 생명 및 재산의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높다. 따라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sup>5)</sup>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기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고 소방서의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소방사범에 대하여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이다.

#### (2) 수사개요

경기도 G시 D동 000번지에서 위험물이 저장된 다량의 드럼통을 쌓아 놓아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우려가 있어 소방서에 안전조치를 하여 달라는 전화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내사를 착수하게 되었다. 민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산업용 윤활유 및 기계유 도·소매업을 하면서 고물상을 하던 장소를 임대하여 무허가 보관 창고를 만들어 윤활유, 기계유 등을 저장하고 있어 무허가 위험물을 취급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의자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을 위반한 범 죄로 인정 피의사실을 조사하고자 출석요구 하였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법대로 처벌하라는 등 완 강히 출석을 거부하여 검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을 심문조사 하여 불구 속 기소한 사건이다.

#### (3) 수사추진 일지

수사의 추진 사항과 체포영장 집행 사항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10. 04. 07 범죄인지 보고
- 2010. 04. 10 출석요구서 발부(1차)
- 2010. 04. 20 수사결과보고(1차, 피의자불응)
- 2010. 04. 21 출석요구서 발부(2차)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호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0. 04. 30 수사결과보고(2차, 피의자불응)
- 2010. 05. 02 출석요구서 발부(3차)
- 2010. 05. 28 피의자 소재 수사보고
- 2010. 05. 31 체포영장 신청(검찰청)
- 2010. 06. 05 체포영장집행보고(내부결재)
- 2010. 06. 05 심문조서 작성
- 2010. 06. 05 피의자 석방 건의
- 2010. 06. 08 수사결과 보고
- 2010. 06. 10 지방검찰청 사건송치

#### (4) 수사 진행과정

##### ① 위법사실의 인지

경기도 G시 D동 000번지 부지에 많은 위험물이 적재되어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니 소방서에서 안전조치를 해 달라는 전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내사를 시작하였다.

특별사범경찰관과 소방검사 전담반 2명이 민원확인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인과 함께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1항에 대한 위반 사실을 고지한 후 범행사실 자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소방서에 방문하여 작성하겠다고 며 날인 거부함에 따라 범죄인지보고 작성하였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4조<sup>6)</sup>에 의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부분에 대해 제거조치 명령을 하고, 가설건축물부분은 관할시청에 통보하였다.

##### ② 출석요구서 발부

출석요구서 1차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피의자는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출석요구서 2차는 특별사범경찰관 등 2명이 피의자의 거주지로 찾아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했으나, 피의자는 지방출장으로 부재하여 피의자의 처에게 출석 요구서를 피의자에게 전달할 것 당부하였다. 피의자에게 전화로 출석요구서 통지 등 자세한 정황을 설명했으나, 본인은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다.

3차 출석 요구서를 피의자의 처에게 전달하고, 피의자에게 전화로 출석할 것과 사정 있을 때에는 출석일자 변경하라는 내용을 고지하였으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할 것이라며 일방적

6) 제24조(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으로 전화를 끊었다.

③ 체포영장신청 및 집행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출석에 응하지 않아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체포영장 발급신청 했다. 체포영장 신청 시 유의사항으로서는 첫째, 체포영장은 반드시 사법경찰관 명의로 신청하고, 둘째, 인치장소는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할 장소, 구금할 장소는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으로 기재한다. 셋째, 체포영장의 집행유효기간은 통상 7일(초일 불산입)로 하여 청구하고, 넷째, 체포영장 신청할 때에는 범죄사실 2부를 편철한다.

체포영장 집행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체포장구류(수갑)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관할경찰서 수사과에서 체포장구를 빌렸다. 체포영장 집행사태가 없어 검찰청 수사관에게 체포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을 문의한바 강력범이 아닌 경우 영장을 제시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조언에 따라 장구류 없이 체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 등 2명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 체포영장에 집행일시 및 장소, 체포자의 관직 성명을 기재하고 체포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내용을 고지한 다음 확인서를 받고, 가족에게 체포에 관한 내용을 통지를 하였다.

④ 심문조서 작성 및 피의자 석방

별도의 조사실이 없어 피의자 인권보호를 고려하여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정리하여 조사실로 활용하였다. 피의자가 범죄증거(보유수량)및 범죄사실(무허가위험물취급)을 부인하여 회유 및 추궁을 하였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등을 마쳤다. 한편, 지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한다는 사유로 검사에게 피의자 석방 가부를 건의 승인받아 석방하였다.

⑤ 수사결과보고 및 사건송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였지만 특별사법경찰관등 3명이 현장에서 위험물 보관수량을 직접 세어 확인한 사항으로 그에 따른 증거사진을 확보한 후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의자를 제반 정황이나 증거 등을 볼 때 범죄가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피의자를 검찰에서 소환하여 심문하였으나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 및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소량이었다고 진술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하였다.

(5) 주요 시사점

무허가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를 해마다 수차례 단속을 해왔으나 상기 장소는 기존 고물상을 임대후 무허가 가건물(천막)을 지어 윤희유 등을 보관한 상태로 건물 밖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 하는 등 현장 단속의 어려움이 있었다.

피의자가 계속 출석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을 때 대부분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 집행사례 등 강제수사의 경험부족으로 특별사법경찰관은 수감 등 체포 장구류 등도 없는데 어떻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집행해야하나 하고 망설일 수 있다.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직무를 행한다는 기본적인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의자가 심문과정에서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왜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문제를 삼으려 하느냐 하는 등 부정일변도의 답변으로 증거물을 제시해도 피의자는 계속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다. 또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으로 당시 현장사진 등을 보강하여 송치서류를 작성하였다.

또한 수사진행과정에서 벌어진 사항일체를 날자 별로 수사보고 하여 수사관계자들에게 수사에 관계 있는 사항 등 즉, 수사의 단서, 증거입수 상황, 수사의 경과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

## 2) 방화관리자 미선임

### (1) 사건의 발단 및 수사경위

2006. 12. 26일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방검사반에 의하여 방화관리자 미선임으로 적발되었으나 업체의 대표자·업체명 등의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최초 적발보고자 소방교 정○○은 관계자의 진술 거부로 대표자의 성명을 확인되지 않은 ‘이○○’으로 하여 본서에 보고하였다.

### (2) 수사과정

2006. 12. 31일경 특별사법경찰 양○○는 현지를 방문하여 대표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심한 욕설을 하며 진술 거부하였다.

피의자 신원파악을 위하여 업체의 전화번호의 명의파악을 위하여 KT 광주지사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KT의 회신결과 전화번호의 명의를 ○○전자(주)로 확인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결과 대표이사가 기○○(남 47세)임을 확인되었다. 기○○의 주소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조회하면서 SKT에 이동전화 가입정보 조회하였다. SKT로부터 기○○의 이동전화를 입수하여 확인한바, 자신은 ○○(주)의 명의상의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자신의 처숙부인 이○○(남 61세)임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전자(주) 실질적인 운영자 이○○은 방화관리자에 대한 혐의를 벗어나기 위하여 제3의 인물 이○○(남 57세)를 선임신고 하고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다. 선임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한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이○○는 다른 업체(○○엔지니어링 - 경기도 ○○시 소재)에 재직 중임을 확인하였다. 이○○에게 확인한 바, 자신은 ○○의료기(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신의 방화관리자자격수첩은 자신의 친구인 엄○○(남 57세)가 보관중이라고 진술하

였다. 엄○○은 ○○소방(소방시설공사업)의 대표자로 ○○의료기(주)에 방화관리자격수첩을 대여하고 허위로 선임 신고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선임하였다고 신고한 이○○는 ○○전자(주)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방화관리자로 인정되지 못하며 직권으로 해임할 것임을 이○○에 통보하였다.

### (3) 체포영장 집행

제1차 체포영장 집행은 피의자를 이○○으로 변경하고 출석요구를 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온갖 욕설을 하면서 출석 거부하였으며, 10차례 이상 전화통화로 계속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폭언을 하면서 계속하여 출석 거부하였다. 이후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다. 2007. 7. 2일 이○○을 강제 구인하기 위하여 체포영장을 신청하여 7. 10일 ○○의료기(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였다. 광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후 이○○의 부인 허○○(여 54세)의 간청에 의하여 당일 21:30분경 석방하고 귀가 조치하였다.

제2차 체포영장 집행은 보강조사를 위하여 이○○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계속하여 출석을 거부하여 이○○의 부인 허○○(여 54세)에게 설명하고 출석을 종용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여 2007. 9. 20일 제2차 체포영장을 신청하였다. 2007. 10. 15. 10:00경 ○○의료기(주)를 방문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소방서 조사실로 강제 구인후 조사하였다.

### (4) 수사종결

이○○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를 비롯한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자신은 모든 사회활동을 타인의 명의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모든 수사를 종료하고 본 사건은 2007. 11. 7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였다. 피의자 이○○은 1심에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공무집행방해죄가 더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고하여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를 받고 상고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 (5) 시사점

피의자 이○○은 관련법령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된 상황으로 방화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처벌의 최고형량(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소방관련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과정상 피의자는 소방공무원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소방관련법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이 요구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 IV. 체포영장 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소방사범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사례 분석을 통하여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실 미확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장구류 미확보, 광역 수사전담부서 미설치, 특별사범경찰관(리)의 역량 부족, 유관기관 간의 업무지원 및 협력 체계 미흡 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운영체계를 개선·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동시에 소방특별사범경찰관의 소방사범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활동의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1.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실 마련

특별사범경찰관은 수사의 주체로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범죄를 수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하는 등 수사권을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피의자 심문조사과정에서 별도의 조사실 없이 사무실에서 많은 직원과 대면해야 하고 심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의자 인권침해소지가 있다.

소방사범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실이 없어 수사관서의 신뢰를 떨어뜨려 증거 및 진술확보 등의 수사상 절차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실을 조속히 확보하여 피의자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한다.

## 2.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장비 확보

특별사범경찰의 사무는 업무범위에 있어서 지역적·사항적 제한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긴급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직무에 적합한 장비가 보급되어야 한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장구류, 즉 수갑, 포승, 경찰봉, 전기충격기, 가스총 등이 적절히 보급되어야 한다(신승균·김종수, 2008: 30).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체포 장구류가 없어 관할경찰서에 협조를 받아 체포 장구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사업무에 필요한 장구 등을 확보하고 수사관 자신이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권한과 책임 그리고 절차 등에 대한 연찬 등을 통해 수사담당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 3. 광역 수사전담부서 설치

경기도의 소방관서 특별법경찰관리 지명 인원 160명중 관리직인 소방경 이상이 100여명이고, 실제 수사실무에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는 60여명이다. 체포영장집행 등 강제수사의 경우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실무자들이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 없이 전임자가 작성해왔던 송치서류 등을 답습하여 처리하는 실정이다. 강제수사의 경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때는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관을 발족하였는데, 소방관서에서도 소방사범 수사에 경험이 많은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별도의 광역수사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된 소방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공백해소와 경험의 축적으로 소방사범을 수사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4.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 강화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 직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소방사범에 대한 수사는 전임자가 처리했던 사항을 답습하면서 초기 수사와 올바른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한계를 보이곤 한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때 그에 대응하는 심문방법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학교 및 법무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과정에 많은 인원을 교육기회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문교육을 통하여 전문적인 체포영장집행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게 하여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 5. 유관기관간의 업무지원 및 협력 체계강화

효율적인 소방사범 수사를 위해서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 그리고 소방서간의 상호 소방사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직접 수사하기 어려운 소방사범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소방본부 전담조직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협조를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관내 경찰, 검찰 등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수시 합동단속과 수사업무지원 등을 통해 효과적인 소방사범 수사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김성은, 2009: 168).

### V. 결론

현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 및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는 화재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대형화재의 발생빈도를 높이고 있음에 비추어 불 때 위험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에서는 1958년 3월 소방법제정 이후 여러 차례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으나 위험물 관련 규정은 소폭 개정에 그치어 위험물 체계는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거의 변화 없이 시행되어온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다. 2004년 소방법에서 위험물분야를 분리시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현재 30개 품목과 55개 품명만을 규정관리하고 있다.

한번 이상 국내에서 유통한 사실이 있는 화학물질은 현재 약 3만6천여 종으로 고시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아 데이터가 확정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전성 데이터를 알지 못한 채 유통 사용되고 있다.

이들 화학물질 중 산업용으로 판매, 유통시키고 있는 취급하는 업체에서 조차도 일부 품목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저촉되어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모른 채 관리·운영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물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무허가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소방사범을 근절시키고 소방사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수사기법을 발굴해 소방특별사범경찰관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범경찰관(리)의 역량 강화, 피의자 인권을 위한 별도의 조사실 마련, 체포영장을 위한 장비 등의 확보, 유관기관 간의 업무지원 및 협력체계 강화, 광역특별사범경찰관제 도입을 통해 소방사범의 처리에 역량강화를 시켜야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경기도소방학교. 2008. 소방사범실무. 경기도소방학교.
- 김성은. 2009. 환경특별사범경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형사정책연구. 20(4): 151-173.
- 백형구. 1990.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당면문제: 입법론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2): 127-156.
- 법제사범위원회. 1995. 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 법제사범위원회.
- 소방방재청. 2011. 내부자료.
- 손동권. 2008.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 신동운. 2004. 제정형사소송법의 성립 경위. 형사법연구. 22: 159-221.
- 신승균·김중수. 2008. 한국자치경찰의 특별사범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연구. 자치경찰연구. 1(1): 3-38.
- 이재상. 1991. 강제수사절차의 개선방안. 2(3): 167-204.
- 이재상. 2008. 형사소송법. 박영사.
- 이효원. 2007. 개정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제도의 입헌주의 합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장규원. 1998. 체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禹性天: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부교수로 재직중이며 주요관심분야는 소방행정, 재난관리, 소방관계법규, 소방학 등이다. 최근 주요저서 및 논문으로는 소방행정학(2010), 재난관리론(2010, 공저), 소방관계법규(2011, 공저)와 소방공무원 멘토링기능이 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2011),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 등이 있다(scwoo@kangwon.ac.kr).

투 고 일: 2011년 09월 02일

수 정 일: 2011년 09월 24일

게재확정일: 2011년 10월 05일

## A Case Study on the Execution of Fire Criminals Arrest Warrant

Seong Cheon Woo

An arrest system is the act of depriving a person of his or her liberty in a certain place like an investigation offi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fore imprisoning the suspect. An arrest warrant system, besides a imprison warrant, is recognized as the need of an investiga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rough supervision and controled by a judg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 fire-criminal arrest warrant, issue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a suspect's human rights and lack of professionalism are being indic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n fire-safety measures based on the drawbacks indicated by the analysis of fire-criminal arrest warrant execution for non-licensed hazardous material storage and handling.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by securing an expert investigation force and arrest equipment, and introducing the metropolita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job capabilit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needs to be reinforced when dealing with fire-criminals.

**Key words:** fire criminal, arrest system, arrest warrant